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구포매립장이 2007. 12. 31일자로 매립종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포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기금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포복지관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 주민지원기금조성 불가로 구포복지관의 운영 방안 명시
 - 구포복지관의 사업내용 명시(신설 제4조)
 - 구포복지관의 사용료 산정 방법 구체적 명시(신설 제5조)
 - 구포복지관 운영 위탁기간(3년이하) 명시(신설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를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목욕탕 및 이·미용시설 운영
2. 생필품 판매시설 운영
3. 주민의 보건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 운영
4. 주민의 교육을 위한 학원, 일반사무실 등 운영
5.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료) ① 복지관 사용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및 불허가 등) 복지관의 사용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2.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업종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계속 위탁받고
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위탁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
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수탁자는” 을 “수탁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로 하고, “목욕탕 시설에 대하여” 를 “복지관
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를 제4호로,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4조제2항 중 “의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5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구미시 공유재
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 제명 띄어쓰기 적용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목욕탕 및 이·미용시설 운영 2. 생필품 판매시설 운영 3. 주민의 보건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운영 4. 주민의 교육을 위한 학원, 일반 사무실 등 운영 5.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복지관 운영사업 구체화
제5조(입욕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구미시장과 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 입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복지관 사용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매립장 종료로 주민지원협의체 존속보장 없음 ⇒ 사용료 산정근거제시
제6조(수입금 관리) 당일 수입금은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익일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7조(입욕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욕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부질환이 있는 자 또는 만취자 2.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시장이 입욕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시설사용 및 불허가 등) 복지관의 사용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2.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업종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의 위탁·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위탁운영) ① ----- ----- ----- ----- ----- ② ----- -----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계속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위탁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탁기간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목욕탕 시설에 대하여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욕료의 징수 및 수입금 관리 2. 복지관 내외 청결유지 3. 복지관의 각종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유지 관리 4. 기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신설〉 2. (생략) 3. (생략)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 ----- ② 수탁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복지관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삭제> 제10조(위탁의 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 제1호와 같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2조(운영인력) 목욕탕 운영 인력은 매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시 확정된 인력으로 하며 근무자는 수탁자가 시장에게 추천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된 후에 근무하여야 한다.	<u>〈삭제〉</u>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생략)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① (현행 제14조와 같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자 자체규정으로 의회 심사사항 아님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4조(시행규칙) (현행 제15조와 같음)	
<u>〈신설〉</u>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